

[] 운송사업
화물자동차 [] 운송주선사업 **법인 합병신고서**
[] 운송가맹사업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합병 하 려는 법 인	갑	법인의 명칭	
		주소	전화번호
	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	을	법인의 명칭	
		주소	전화번호
	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합병 후 존속하거 나 합병에 따라 설 립되는 법인	법인의 명칭		
	주소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
합병내용	사업의 종류		
	합병의 방법 및 조건	합병하려는 일자	
	합병 사유	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6조 ·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·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	년	월	일
피합병인 대표자 (갑)			(서명 또는 인)
피합병인 대표자 (을)			(서명 또는 인)
합병 후 존속(설립) 법인 대표자			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고인 (대표자) 제 출서류	1.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.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.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(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3,000원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 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 도지사 확인 사항	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수 리	→	통 보
신고인		처리기관: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)						